

의안번호	2205386
의 퇴 인	문진석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3.
추 계 번호	24B3940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5조제1항 (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) 단서 신설	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(이하 “타공사”라 한다)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(이하 “타행위”라 한다)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. <u>다만,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5조제1항 (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) 단서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비용의 일부 부담(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)
 - 현행법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

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공사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한 현황은 연평균 일반국도 10.4건(0.4억원), 고속국도 1,570건(46억원) 규모임

[표 1]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한 현황

(단위: 건, 억원)

구분	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
일반 국도	건수	12	7	8	13	12	10.4
	금액	0.2	0.1	0.5	0.8	0.5	0.4
고속 국도	건수	1,929	1,818	1,462	1,359	1,283	1,570
	금액	50.8	44.5	43.8	48.7	44.2	46

자료: 국토교통부

- 개정안은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도로공사 중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현행법에 따라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한 자 등 원인자 부담으로 실시한 공사는 모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한 공사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은 통로암거 등의 실적은 없었음
-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향후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건설로 인하여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,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의 수 및 공사 내용·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교량, 통로암거, 교차로, 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로공사의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공사비가 상이하 여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도로관리청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